

CIA “북한 주민 기대수명, 한국보다 11년 짧다”

남북의 평균 기대수명이 11살 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뉴스핌’이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최근 국가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구와 사회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CIA는 보고서에서 남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11살 차이라고 밝혔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CIA는 “북한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남성 67.7세, 여성 75.6세로 평균 71.6세이고 한국은 남성 79.4세, 여성은 85.9세, 평균 82.6세”라며 “한국인이 북한인보다 보통 11살을 더 산다.”고 추산했다.

CIA는 또 출생률은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8.2명을 기록해 세계 바닥권 수준인 220위, 북한은 14.5명으로 128위를 기록했다.

영아사망률은 한국이 북한보다 현저히 낮았다.

CIA는 “인구 도시화율은 북한이 62.4%, 한국은 81.4%이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은 북한이 1,000명 당 22명으로 세계 76위, 한국은 1,000명 당 2.8명에 불과해 선진국 최고 수준인 216위로 집계됐다.”며 “다만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CIA가 지난 2012년 집계한 1,000명 당 26명보다는 4명이 감소해,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양의 인구는 2020년 기준 서울시민의 1/3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CIA는 “북한의 인구는 2,560만명인데, 이 중 평양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는 30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996만명으로 집계된 서울시 인구의 1/3 수준(30.9%)”이라고 밝혔다.

중국, 미국 매체 중국인 직원 취재증도 회수

미·중이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주요 매체들에 대한 제재를 주고받으며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보복 수위를 높였다. 중국 당국은 중국 주재 미국 매체의 미국 국적 기자에 이어 중국인 현지 직원의 취재 허가증까지 회수했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인원복무국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의소리(VOA) 방송, 타임지 등 5개 미국 매체의 중국 지국에 소속된 현지 중국인 직원의 취재 허가증을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직원은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창(耿爽·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외신과 외신 기자의 정상적인 보도 활동을 위해 지지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NYT, WP, WSJ의 기자 중 기자증 시효가 유효해지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10일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또 NYT, WP, WSJ 외에 VOA 방송, 타임지의 중국 지국에 중국 내 직원과 재정 및 운영 상황,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양국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방 언론을 고리로 부딪쳐 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 언론이 아닌 사절단 대우를 받게 되면 해당 매체들은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자, 중국은 다음날인 19일 베이징 주재 WSJ 기자 3명을 추방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은 진짜 아시아의 병자’라는 WSJ 칼럼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중국 국영 언론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뉴질랜드, 낙태 합법화... “범죄 아닌 건강 문제”

뉴질랜드에서 낙태가 합법화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회는 전날 낙태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없애고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독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법안은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임신 20주 안에는 임신부와 의사가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임신 20주 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역시 낙태 시술이 허용된다. 이때는 2명의 의사가 낙태

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야만 한다.

뉴질랜드에서 낙태는 지금까지 형법의 처벌 대상이지만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등 법률 적용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지난 40여 년 동안 낙태는 뉴질랜드에서 범죄로 여겨져 온 유일한 의료 시술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부터 낙태는 건강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기 의사에 따라 표를 던지는 양심투표로 이루어졌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